

제 611 호
1977. 6. 16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편집: 문화정보관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시보

차례

◎ 조례

제 1170 호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설치조례	3
제 1171 호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조례	3
제 1172 호	서울특별시 수수로 정수조례증개정조례	12
제 1173 호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액에 관한조례	13

◎ 고시

제 178 호	도시계획시설(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및 지적승인	13
제 188 호	도시계획 미관지구 지적승인	14
제 189 호	도시계획(학교) 지적승인	14
제 190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15
제 191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허가	16
제 193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자지적승인	16

(이면제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774

제 194 호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6
◎ 공 고		
제 128 호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17
제 132 호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18
제 133 호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지급공고	18
제 134 호	이수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환지계획변경 및 추가환지계획 인가공고	20
제 135 호	환지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	20
제 13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21
제 325 호	(도봉구공고) : 풍인개각공고	48
◎ 예 규		
제 349 호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 지구내 시유지 관리 및 처분업무 취급요령	49
◎ 사 령		
		51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제 1170호	②전항의 사용로는 따로 조례로서 정한다.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7. 6. 1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하점성	제6조(위임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	부 칙
제 1 조(목적) 학생들의 체육향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산하에 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위치) 학생체육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둔다.	-----
제 3 조(관장) ①학생체육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학생체육관을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 1171호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사용로 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7. 6. 1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하점성
제 4 조(정원) 학생체육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로징수조례
제 5 조(사용로) ①학생체육관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로를 징수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의 사용로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실내경기장과 이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는 요금을 「사용료」라 한다.
2. 「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사용 과 방송(T.V 포함) 광고, 게시, 전람, 이동판매 및 대여를 포함 한다.)	8. 「유료입장」이라 함은 요금을 징수하고 입장시키는 것을 말하 고,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입장 시키는 것을 「무료입장」이라 한다.
3. 「전용자」라 함은 실내체육관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전용자가 낭부하는 요금을 「전 용료」라 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한도액) 학생체육 관의 사용료 징수한도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고, 이용자가 낭부하는 요금을 「이용료」라 한다.	제4조(시설 사용허가증)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한 학생체육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학생체육관장 (이란 「관장」이라 한다)에 제출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관람자」라 함은 관람을 목적 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하고 관람 자가 낭부하는 요금을 「관람료」라 한다.	② 관장은 전항의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 부하여야 한다.
6. 「입장자」라 함은 전 각호 이 외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 하고, 입장자가 낭부하는 요금을 「입장료」라 한다.	1. 학생체육행사 계획상 충분이 예상될 경우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 우
7. 「사용자」라 함은 전 각호의 모든자를 말하고, 사용자가 낭부하	

<p>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p> <p>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③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p> <p>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p> <p>2. 경기질서가 심히 소란할 때</p> <p>3.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p> <p>④사용자가 전용하는 기간중에 자비로 특별한 서비스를 하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철거조건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서비스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서비스허가 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관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p> <p>제5조(전용) ①학생체육관의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에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p>	<p>가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p> <p>②전항의 허가신청시에는 사용료의 기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관람료로시를 제외하고는 분납할 수 있다.</p> <p>③전항의 허가서에는 기간·시설과 서비스 관계 및 관람료를 정수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와 허가조건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학생체육관의 1일 전용시간은 다음과 같고, 전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1시간당 야간기본액의 2배를 초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p> <p>주 간 : 08:00부터 18:00 야 간 : 19:00부터 23:00</p> <p>제 6조(이용) ①학생체육관의 시설을 연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자(단체포함)는 관장이 지정한 일시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이용자는 이용권을 구입</p>
--	---

하여야 하고 소정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1시간마다 이용료의 반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관람) ①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는 소정의 관람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관람자의 단체 입장 범위와 관람료의 할인방법 및 부활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입장) ①전용자·이용자·관람자 이외의 자가 입장할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시설관리와 위생 및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관장은 공익 및 규칙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학생체육관의 귀책 사유가 없는한 원칙적

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전용자 및 이용자 가 7일 이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정 사용료의 반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연체과 손해배상 책임)

①관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허가의 취소나 철회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사용자가 시설등을 파손하거나 감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중에는 누구의 행위임을 불구하고 전용자가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전용자는 관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시설 사용에 관한 기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예표) 사용자가 납부하는

각종 요금 중 관람권, 이용권 및 입장권은 학생체육관에서 예외한다.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3조(위임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관 사용료

명 칭	구 分	토·일·요일 공·휴·일	평 일	비 고
전 용 료 (기본액)	1. 체육경기 행사			
	가. 주 간	14,000 원	11,000 원	(전용시간 기준)
	나. 야 간	20,000 "	15,000 "	(")
	2. 체육이외의 행사			
	가. 주 간	71,000 원	54,000 원	(")
	나. 야 간	85,000 "	65,000 "	(")

명 칭	구 分	단 위	금 액	비 고
이 용 료	개 인	1인 2시간당	500 원	1단계기준은 30명 이상)
	단 계	2시간당	3,000 원	

51-8 제 611 호

시

보

1977.6.16

명 칭	단 위	금 액	비 고	
일 장료	1인 1회	20 원		
 .				
명 칭	종 류	구 분 (국제·국내)	금 액	비 고
			페 래 비	라 디 오
중계방송료	프로레스팅	국 제 경 기	48,000	24,000
		국 내 경 기	18,000	9,000
프로권투	국 제 경 기	48,000	24,000	
		국 내 경 기	18,000	9,000
농 구	국 제 경 기	24,000	12,000	
		국 내 경 기	6,000	3,000
배 구	국 제 경 기	12,000	6,000	
		국 내 경 기	3,000	1,500
아마추어 권투	국 제 경 기	18,000	9,000	
		국 내 경 기	3,600	1,800
기 타 경 기	국 제 경 기	6,000	3,000	
		국 내 경 기	1,200	600
체육이외행사		48,000	24,000	

제 611 호 시

보 1977. 6. 16 51-9

명 칭	종 류	금 액
상행위 상의 사용료	1) 체육관 시설을 사용한 영화촬영행위	○ 주간 20,000 원 야간 30,000 원 (전용의 경우에 준한다)
	2) 에드바운 및 유사물제약 에 관한 광고행위	○ 1개 1일간 2,000 원 (단,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3) 프로그램 판매 행위	○ 장내 반입부수에 1부당 가격을 끌한 금액의 2 할 상당액
	4) 기타 (선전, 광고, 계시, 전화, 물품판매, 대여, 기타행위)	○ 계약자의 연간계획서에 의한 총수익금의 (원 가를 제외한 금액) 2 할

명 칭	종 릴	단 위	금 액	비 고
부속설비 사 용 료	나 이 타	1회	36,400 원	
	학 성 기	1회 1개	2,000 원	
	전 기 로		판 허 요 금	(별도 산출)
	경기장 및 기타 시설		"	"
	조명		판 허 요 금	(")
	냉 방		실제 사용한 유류대금 (교시 가격에 의한다)	(")
	난 방			

51-10 제 611 호

시

보 1977. 6. 16

(별지 제 1 호서식)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처리 기간	
신청인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 :)			
신청 내용	사용코자 하는 시설	시설			
		목적			
		사용 기간			
		사용 시간			
	부대시설	라디오 중계			조명
		라디오 녹음			확성기
T·V 녹화				나이타	
경기행사 환영				난방	
상행위				냉방	
T·V 중계					
관람권	특별관람권	원	예매처	비고	
	일반관람권	원			
	학생군경권	원			
	초대권	원			
	단체권	일반			원
		학생			원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사용로 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7 . . .					
신청인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장 귀하					
첨부: 사업계획서 1통					

제 611 호 시

보 1977. 6. 16 51-11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시설 사용허가서

1.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2. 사용허가의 시설

허가 시설	목 적	사용 기간	사용 시간	비 고

3. 사용시의 부대설비

설비명	수량	설비명	수량	설비명	수량	설비명	수량	비 고
증계방송		확성기						
T V 증계		난방						

4. 관 람 권

구 분	금 액	매 수	구 분	금 액	매 수
특별관람권			단체권	일 반	
일반관람권				학생군경	
학생군경권					

5. 사 용 로

구 分	금액 (기본이)	산 출 기 초	비 고
전 용 료			
부대설비 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제			

6. 조 건

위와 같이 허가함.

19 . . .

서 울 특 별 시 학 생 체 육 관 장

51-12 제 611호 시

보 1977. 6. 16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
특별시 수수로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6월 16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1172 호

서울특별시 수수로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수수로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57호를 58호로 하고
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마약판매서 및 구입서 융자교부
1매 3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
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1173 호

서울특별시지방소방공무원 수당
지급액에 관한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방
공무원 수당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 9 조 제 2 항에 의하여 서
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이하 소
방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당
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합숙생활지도수당) 수당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합숙생활
지도수당은 1 일밤 1,500 원으로
한다.

제 3 조(편집, 편찬수당) 수당규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편집, 편찬
수당은 1 일당 1,500 원으로 한다

제 4 조(교재연구수당) 수당규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교재연구수당
의 월지급액은 지방소방령 이상은
월 33,000 원으로, 지방소방경은
월 25,900 원으로, 지방소방위는 월
20,800 원으로, 지방소방사 이하는
월 17,700 원으로 한다.

제 5 조(조정수당) 수당규정 제 7 조
의 규정에 의한 조정수당의 월지
급액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별 표

조정수당지급구불표

계급별	월지급액
지방소방령이상	20,000 원
지방소방경	17,000
지방소방위	16,000
지방소방사	15,000
지방소방장	14,600
지방소방원	14,000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8 호

도시계획시설(일단의 주택과
조성사업) 결정 및 지침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일단의

51-14 제611호

시

보 1977.6.16

주택지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 6. 8

서울특별시장

가.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승권단지	경기도시흥군 서면 광명리 241의 27 필	68,994㎡

서울특별시고시제 188호

도시계획미판지구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미판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규정과 전설부고시 제41호(77.3.16)의 원칙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 6. 13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미판지구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순위	지구명	종별	기점	승점	연장m	비고
92	노선미 판지구	4종 가 15	회현동 2 회현 1가	145의 6	550 m	노선양 측 12m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89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76호(77.6.4)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 6. 13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학교)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학교(중·고등학교)	관악구 신림동산 203-2호의 3필지	26,736 ㎡(8,709평)	

별첨도면과 갈음(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0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에 의한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지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 6. 6

서울특별시장

가. 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관악구 봉천동 611의 1호의 6필지	2,909 (880평)	상화교통
	동대문구 망우동 360의 1호의 3필지	1,653 (500평)	서울버스

※ 별첨 도면 표시와 갈음(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1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0 호('76.10.
29)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
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시내버스
주차장)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제 25조 및 제 2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양서출장소 도시경비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제
인에게 보인다.

1977. 6. 17

서울특별시장

51-16 제 611 호

시

보

1977.6.16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목동 406-1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내버스주차장 용지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 3,263평(987평)
4. 시행자의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143-1
중부운수주식회사 대표 이상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일주일이내
- 나. 준공예정일 : 1977.10.6
6. 위치 및 계획면도 : 별첨
(도면생략) 끝.

◎ 서울특별시고시제 193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자자격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125호(77.4.27)
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자격승인된
도시계획사업(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건설부 고시제 41호(77.3.16)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
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판재파
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6.

서울특별시장

<승인 개요>

1. 사업시행지 : 강남구 가락동
112-2의 23번
2. 사업규모 및 명칭 : 중·고등학교신설
3. 사업규모 및 면적 : 12,065평
4.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사업실시 계획인가
일로부터
- 나.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년
6. 위치도 :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94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 고시제 46호(76.4.7)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 611 호 시 보

1977.6.16 51-17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고시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아게 한다.

1977.6.10

서울특별시작

1. 사업시행의 위치 : 동대문구 회경
동 71.7 회경동 100.1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이문동~
회경동간 간선하수도공사

3. 사업의 규모 : 암거설치 ($4m \times 3m \times 2$) L = 150.5m

암거개수 ($4m \times 3m \times 2$) L = 38m

암거개수 ($3.5m \times 3m \times 3$) L = 10m

보차도경계부역 ($20 \times 25 \times 100$)

L = 684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1977.3.8 ~
77.11.30

6. 사용 또는 수용한 재산의
소재지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토지조사

공 고

⑤ 서울특별시 공고 제 128 호

환지계획 변경 공람 공고

1. 영동제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
구내 환지예정지 (아파트지구) 중
일부 환지예정지 지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환지계획 변경 조서는 도시정비국

51-18 제 611호 시 보

1977.6.16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본 공고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적용한다.

1977. 6
서 울 특 별 시 장

(환지계획변경내역)

가. 사업명 : 영동제 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4,521.6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신사동 360의 13호의 21필지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2 호

환지계획변경공람 공고

1. 영동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제3공구 1172구획 시장
용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사유
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
(시장용지 폐지) 하자,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환지계획 변경조사는 도시 경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잘용한다.

1977. 6.

서 울 특 별 시 장

(환지계획변경공람내역)

가. 사업명 : 영동제 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1,000평

다. 변경위치 : 영동제 1지구 3공구

1172구획

라. 변경목적 : 시장용지 용도변경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3 호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지급공고

교육공무원 공로퇴직수당 지급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받은 자
1. 수당지급대상자 공립 초·중등교원으로서 지급일 현재 다음 연령과 경력에 해당하 는 자	2. 수당지급일 : 1977년 3월 31일 3. 신청기간 : 1977년 7월 21일 ~ 7월 30일 (10일간) 4. 신청절차 소정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 하여 신청인의 소속기관 및 감독청 을 거쳐 시·도교육감에게 제출 한다.
가. 연령 1) 60세이상 2) 신체정신상 장애로 퇴직을 원 하는 자는 55세 이상	5. 지급액 기준호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에다 지급액수를 출한 금액
나. 경력 (교육경력 , 교육연구경력 , 교육행정경력 통산) 1) 30년이상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상 가) 재직중 훈장을 받은 자 나) 재직중 각급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자 다) 재직중 도단위 이상의 공인 된 단체의 장의 표창을	6. 지급절차 가. 대상자신청통지 지급대상자의 근무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구청장에게 통지한다. 나. 수당지급장소 소속기관의 소개지를 관할하는 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 7.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교육구청 또는 당교육위원회에 문의할 것 .

1977. 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51-20 제 611호

시

보 1977.6.16

◎ 서울특별시 공고제 134호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계획
변경 및 추가환지계획인가공고

1. 서울특별시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으로부터 환지계획변경 및 추가 환지계획인가 신청에 의하여 동·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1조 및 제5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도서와 같이 환지계획변경 및 추가 환지계획을 인가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공 고 내 용

- 가. 사업명 : 이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배동, 사당동 일부 토지
다. 환지계획변경 및 추가환지계획인가
면적 : 36,584평
라. 관계도면 및 조서 : 별첨(생략)

1977.6.20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135호

환지계획인가변경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연천, 도봉, 망우, 김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에 공한다.
2. 환지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서류송달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6.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연천, 망우, 도봉, 김포,
토지구획정리사업

2. 변경내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공농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창동 일부토지
3. 변경도서 : 행락(서울특별시 도시
계획국 구획정리과 비치)

◎ 서울특별시 공고제 13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177 호(62.12.9)로
고시된 공덕동~원효로 1가간 도로
개설공사 구간내에 저측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
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잘을 함.

3. 본래 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 및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6.21

서울특별시장

공 람 개 요

1. 사업장위치 : 마포구 공덕동 438
의 2~용산구 원효로 1가 25의 2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공덕동~원효
로 1가간 도로개설 공사
3. 사업의 규모
 - 가. 폭 = 28 미터
 - 나. 연장 = 1.470 미터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6.11.3 ~ 77.12.31
6. 사용 또는 수용 할 토지 : 면적 토지조사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다음

51-22 제 611호 시 보 1977.6.16

No	위 치	지목	지 칙	토 지 · 조 서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마포구 공덕동 440-2	대	19	공덕동	439	심순숙외 2인
2	" 437-4	"	106	도화동	25-8	김규승외 2
3	" 437-27	"	182	운나동	55	김승구외 1
4	" 437-25	"	84	동자동	35-28	이재화
5	신공덕 54-3	"	13	신공덕	15-88	정해원
6	" 56-64	"	28	공덕	430	황경진
7	" 55	"	15	신공덕	56-40	박영선
8	" 56-62	"	20	공덕	430	황경진
9	" 57-3	"	16		"	"
10	" 57-2	"	23		"	"
11	" 57-7	"	7	신공덕	15-88	정해원
12	" 56-72	"	12	공덕	430	황경진
13	" 56-59	"	36	신공덕	56-1	김종웅
14	" 56-60	"	18		"	"
15	" 56-32	"	30	신공덕	56-32	이창우
16	" 56-73	"	17	"	56-54	김우형
17	" 56-57	"	4	"	56-1	김종웅
18	" 56-31	"	22	"	56-1	"
19	" 56-30	"	3	"	56-15	최수길
20	" 56-66	"	18	"	56-25	이기형외 7

제611호

시 보

1977.6.16 51-23

No.	부 칙	제정	개정	소 계		성 명	
				주 소	소		
21	신 공역	56-15	대	29	신 공역	56-15	최 수 진
22	"	56-16	"	35	"	56-16	김 세 형
23	"	56-17	"	14	"	56-26	김 종 태
24	"	56-18	"	14	"	56-27	조 등 순
25	"	56-17	"	28	영 등 고, 오류동	54-155	도 순 자
26	"	56-18	"	32	신 공 역	56- 18	김 남 숙
27	"	56-19	"	19	"	56- 28	전 전 상 훈
28	"	56-23	"	3	"	56- 33	박 기 험
29	"	56-34	"	1	"	56- 34	이 철 우
30	"	57- 6	"	1	공 역	438	황 경 진
31	"	124- 1	"	26	신 공 역	126	박 태 근
32	"	125- 5	"	9		125- 5	정 현, 성 외 7인
33	"	125- 3	"	12		125- 3	박 은 일
34	"	125- 4	"	5	다 흥 동	243	박 회 써
35	"	123	"	24	신 공 역	156- 40	박 영 친
36	"	124- 1	"	8	"	146- 59	조 화 자
37	"	124- 2	"	2	"	127- 9	신 성 철
38	"	122- 2	"	51	"	122	김 백 합
39	"	125- 2	"	15	"	125- 2	이 인 순
40	"	125- 1	"	12	"	125- 1	신 친 충 식
41	"	127-96	"	5	"	127- 10	자 해 선
42	"	127-11	"	5	"	"	"
43	"	127-98	"	24	"	127- 14	강 흥 선
44	"	127-97	"	0.3	공 역	426	이 유 경
45	"	121	"	45	신 공 역	121	차 석 조

51-24 제 611 호 시 보 1977. 6. 16

No	위 치	지목	지적	소 재 지		성 명
				주	소	
46	신 풍 억 127-100	대	3	신 풍 억	127- 28	박 찬 회
47	" 127- 67	"	14	"	"	방 우 향
48	" 127- 101	"	18.8	구 로	35- 35	남 철 회
49	" 127- 54	"	33	신 풍 억	127- 28	정 동 춘
50	" 127- 102	"	5	"	"	안 원 용
51	" 127- 103	"	2	"	"	"
52	" 127- 104	"	1	"	127- 75	김 육 해
53	" 127- 79	"	51	"	56- 16	최 진 무
54	" 120- 2	"	26	"	120- 2	강 순 봉
55	" 127- 73	"	22	"	127- 28	손 성 만
56	" 120- 1	"	54	"	120- 1	조 상 운
57	" 127- 74	"	30	"	327- 28	이 영 찬
58	" 119	"	45	"	119	양 기 웅
59	" 118	"	30	"	118	김 영 쪽
60	" 117	"	23	"	117	방 규 순
61	" 116- 1	"	14	"	116- 1	김 군 자
62	" 116- 2	"	13	"	116- 2	안 기 흥
63	" 115-	"	40	"	115	이승복외 5
64	" 114	"	70	"	114	이 문 흥
65	" 113- 1	"	95	"	113	이 해 운
66	" 112	"	23	"	"	"
67	" 111	"	14	"	111	조 오 상
68	" 127-110	"	29	"	127- 28	유 대 형
69	" 110	"	31	"	110	황 회 조
70	" 109- 1	"	38	"	109	박 윤 대
71	" 108- 1	"	6	"	108	이홍준외 4

제 611 호 시 보 1977. 6. 16 51-25

No	위 치	지목	지적	소 재		지 성 명
				주 소	소 소	
72	신 공역 86- 3	대	24	신 공역	86- 3	박 충 화
73	" 86- 4	"	7	"	86- 4	김 경 자
74	" 86- 2	"	22	"	86- 1	강 모 개
75	" 86- 2	"	20	"	86- 2	원 더 윤
76	" 84- 1	"	1	"	84- 1	이 관 봉
77	" 87	"	17	"	87	조 득 수
78	" 88	"	33	"	88	박 회 자
79	" 89- 2	"	5	"	89- 2	조 명 휘
80	" 89- 1	"	8	"	89- 1	망 윤 원
81	" 105- 2	"	21	"	12- 11	이 예 옥
82	" 105- 1	"	23	"	105- 1	이 봉 호
83	" 106	"	80	"	106	박 용 기
84	" 107- 1	"	15	경기, 안성, 일죽, 능곡	37	권 혁 통
85	" 130-119	"	0.3	신 공역	130- 18	이 순 범
86	" 104- 1	"	14	"	104- 1	송 옥 연
87	" 104- 2	"	6	"	104- 2	진 쟁 길
88	" 104- 3	"	19	"	104- 3	박 광 익
89	" 104- 4	"	6	영 농포, 목동	230	구 태 환
90	" 103- 1	"	7	신 공역	104- 1	문 옥 연
91	" 103- 2	"	5	"	104- 2	김 쟁 길
92	" 103- 3	"	22	"	104- 3	송 외 점
93	" 103- 4	"	29	한경	380- 20	김 규 영
94	" 103- 5	"	13	신 공역	104- 3	박 광 익
95	" 103- 6	"	16	목동	230	지 태 환
96	" 103- 7	"	22	신 공역	106	전 승 현
97	" 103- 8	"	15	"	103- 8	우 자 형

51-26 제 611 호 시 보 1977.6.16

No	위 치	지목	지적	소 재 지		성 명
				주주	소	
98	신 공 대 100- 9	대	7	신 공 대	103- 9	전 규 환
99	" 100- 10	"	4	"	56- 13	강 영 성
100	" 130- 116	"	14	"	130- 23	강 병 춘
101	" 130- 117	"	9	"	130- 21	김 연 식
102	" 130- 20	"	29	"	130- 20	이 현 찬
103	" 130- 19	"	15	"	130- 19	김 석 환
104	" 145- 12	"	3	"	145- 2	김 상 오
105	" 145- 11	"	13	"	"	"
106	" 145- 4	"	13	"	145- 4	이경 철 외 5인
107	" 145- 5	"	26	"	145	최재인
108	" 102- 21	"	11	"	102	윤성열 외 2
109	" 102- 21	"	55	"	"	"
110	" 148- 77	"	8	"	148- 77	이예준 외 1인
111	" 148- 78	"	1	"	148- 78	이대희
112	" 148- 173	"	13	"	148- 1	박충서
113	" 148- 83	"	1	"	148- 83	이정봉
114	" 148- 73	"	29	"	148- 1	박충서
115	" 148- 181	"	26	"	148- 9	김명필
116	" 148- 69	"	19	"	148- 1	김명숙
117	" 148- 223	"	13	"	148- 14	방상학
118	" 148- 220	"	5	"	148- 1	박웅선
119	" 148- 219	"	15	"	148- 20	박윤수
120	" 148- 24	"	30	"	148- 24	길도수
121	" 148- 23	"	20	"	148- 182	김명중
122	" 148- 28	"	25	"	148- 28	한수원
123	" 148- 27	"	24	"	148- 27	장외명

제 611 호 시 보 1977. 6. 16. 51-22

No	위 치	지역	지적	소 재 지		성 명
				주 소	소 소	
124	신공역 148-31	대	23	신공역	148-31	심 수 일
125	" 148-32	"	26	"	148-32	김 명 근
126	" 148-33	"	21	"	148-33	주 성 호
127	" 148-36	"	4	"	148-36	강 치 옥
128	" 148-29	"	8	"	148-	홍 재 태
129	" 148-37	"	26	"	148-37	송 원 근
130	" 148-64	"	5	"	148-65	홍 창 흰
131	" 148-63	"	35	"	148-63	일 총 철
132	" 148-42	"	20	"	148-42	김 교 성
133	" 148-40	"	31	"	148- 1	이 복 순
134	" 148-25	"	12	"	148-45	김 연 난
135	" 148-52	"	21	"	148- 1	양 순 남
136	" 148-53	"	10	"	148-53	이 벌 우
137	" 148-59	"	11	"	148-54	강 계 수
138	" 148-198	"	12	"	"	"
139	" 148-106	"	27	"	148-106	김 진 우
140	" 148-105	"	17	"	148-105	정 선 채
141	" 148-103	"	21	"	148- 1	김 태 경
142	" 148-202	"	28	"	148- 3	이 선 환
143	" 148-168	"	19	"	148-77	이예준의 1인

51-28 제 611호

시

보

1977.6.16

No	위 치	지목	지적	소 재 지		성 명
				주 소	소 소	
144	신 머동 148- 192	대	2	신 공덕	148- 20	반 윤 수
145	" 130- 22	"	15	"	130- 23	황 보 봉천
146	" 148- 60	"	10	"	148- 60	박 철 숙
147	" 148- 199	"	13	"	148- 60	"
148	" 148- 34	"	21	"	148- 34	엄 해용(의 2인)
149	" 148- 182	"	12	"	148- 182	임 석 풍
150	" 148- 22	"	15.6	"	148- 16	홍 잡 순
151	" 148- 193	"	0.4	"	"	"
152	" 148- 39	"	11	봉신, 효창산	9-21	김 장 수
153	" 148- 43	"	28	신 공덕	139- 177	김 잡 수
154	" 148- 19	"	22	"	148- 19	김 척 운
155	" 148- 30	"	19	"	148- 30	백 도 환
156	" 148- 94	"	13	"	148- 34	엄 해승(의 2인)
157	" 148- 38	"	12	"	139- 177	조 숙 영
158	공 덕 동 438- 6	"	295			국 유 지
159	" 439- 1	"	4			삭 울 지
160	" 439- 2	"	44			"
161	" 438- 3	"	21			"
162	신 머동 56- 63	"	22			"
163	" 56- 58	"	6			"

번호	위치	지목	지적	소재지		성명
				주	소	
164	신 공역 56-77	대	2			국
165	" 56-29	"	21			"
166	" 56-74	"	344			"
167	" 127-13	"	24			"
168	" 127-12	"	23			"
169	" 127-68	"	24			"
170	" 127-69	"	19			"
171	" 127-48	"	3			"
172	" 127-70	"	14			"
173	" 127-99	"	1			"
174	" 127-105	"	3			"
175	" 127-66	"	11			"
176	" 127-88	"	15			"
177	" 127-47	"	2			"
178	" 127-46	"	4			"
179	" 127-45	"	4			"
180	" 127-91	"	7			국 을 지
181	" 127-109	"	8			"
182	" 145-10	잡	16			"
183	" 145-9	대	202			"
184	" 148-75	"	16			"
185	" 148-74	"	2			"

53-30 제 611호

시

보

1977.6.16

No	위 치	지목	지적	소 재 지		설 명
				주	소	
186	전 공 데 148- 68	대	6			국 유 지
187	" 145 - 13	잔	29			"
188	" 146 - 99	대	8			"
189	" 146 - 100	"	7			"
190	" 146-101	"	15			"
191	" 146-102	"	10			"
192	" 146 - 98	"	1			"
193	" 146-103	"	1			"
194	" 148-222	"	2			"
195	" 148-223	"	7			"
196	" 148- 16	"	14			"
197	" 148- 21	"	39.5			"
198	" 148- 160	"	19			"
199	" 148- 26	"	18			"
200	" 148- 41	"	30			"
201	" 148- 162	"	16			"
202	" 148- 62	"	3			"
203	" 148- 61	"	3			"
204	" 148- 44	"	8			"
205	" 148- 224	"	7			"

제611호 시 보 1977.6.16 51-31

No.	위 치	지역	지적	소 재 지		성 명
				주	소	
206	신공역 148- 54	대	27			국 유 자
207	" 148- 55	"	16			"
208	" 148- 57	"	15			"
209	" 148- 58	"	33			"
210	" 148- 200	"	15			"
211	" 148-108	"	1			"
212	" 148-1087	"	5.9			"
213	" 148- 201	"	0.1			"
214	" 148- 50	"	17			"
215	" 148- 227	"	29.4			"
216	" 148- 226	"	11.8			"
217	" 148- 51	"	35			"
218	" 148- 106	"	18			"
219	" 148- 107	"	60			"
220	" 127- 87	"	9			"
221	" 127- 43	"	6			"
222	" 127- 44	"	1			"
223	" 127- 92	"	3			"
224	" 130- 115	"	18			"
225	" 146- 85	"	3			"
226	" 148- 203	"	0.5			"

51-32 제 611호

시 보

1977.6.16

No	위 치	지목	지적	소 재 지		성 명
				주 소	소 재 지	
227	신공 148-191	대	1			국 유 지
228	" 148- 48	"	2			"
229	" 148- 49	"	2			"
230	" 148-104	"	10			"
231	" 148-179	"	6			"
232	" 148- 89	"	0.3			"
233	" 127- 89	"	0.9			"

토 지 조 서

순위	소 재 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	원효로1가 26- 1	대	12	26-61	대	24			국
2	" 26- 4	"	40	26-50	"	0.2			"
3	" 25- 2	"	396.4	25-11	"	89.9			"
4	" 25- 1	"	116.3	좌동	"	좌동			"
5	" 25- 4	"	365	"	"	"			"
6	" 25- 5	"	61.2	"	"	"			"
7	" 24-24	"	44	"	"	"			"
8	" 24-11	"	35	"	"	"	좌 동	박 전	홍
9	" 24-25	"	17	34-30	"	13.1	원효1가 24-18	박 전	홍
10	" 24-20	"	15.8	24-29	"	4.2	" 24-10	이 동	석
11	" 24- 9	"	18	2428	"	2.7	" 24-19	윤 금	석
12	" 23- 3	"	18.3	23-63	"	0.4	" 23- 3	감 중	현
13	" 23-46	"	2.4	23-46	"	2.4	" 23-46	송 화	정
14	" 23-19	"	11.5	23-66	"	1.2		최 성	국
15	" 23-41	"	14.3	23-64	"	8	" 23-41	최 총	금

제 611호 시 보 1977.6.16 51-33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통합후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6	원효1가	23-2	대	44.6	23-65	대	43.7	원효1가	23-3	반성윤
17	"	24-13	"	2	24-13	"	2	"	24-13	24전진웅
18	"	24-14	"	19	24-14	"	19			국
19	"	23-1	"	26	23-1	"	26			"
20	"	24-27	"	0.5	24-27	"	0.5			"
21	"	23-24	"	42.6	23-24	"	42.6			국외1이 (식진우)
22	"	23-23	"	4.3	23-23	"	4.3			"
23	"	23-44	"	8	23-44	"	8			국외4안
24	"	23-22	"	18	23-62	"	17.4	원효1가	23-22	최재원
25	"	23-32	"	4.5	23-61	"	0.4	"	205-38	김화경
26	"	23-5	"	17.4	23-5	"	17.4	"	23-6	홍석태
27	"	23-37	"	17.5	23-37	"	17.5	"	23-6	"
28	"	23-6	"	11.1	23-60	"	0.9	"	205-38	김화경
29	"	23-34	"	16.5	23-59	"	2.3	"	23-36	임기봉
30	"	23-36	"	29.3	23-36	"	27.3	이촌동	302-70	김시장
31	"	23-40	"	22.10	23-40	"	22.10		-	국
32	"	23-8	"	24.2	23-58	"	9.6	원효1가	79-3	오관식
33	"	23-42	"	2.3	23-42	"	2.3			국
34	"	23-49	"	22.4	23-57	"	19.6	원효1가	23-38	이희삼
35	"	23-47	"	6.2	23-47	"	6.2			국
36	"	23-39	"	24.9	23-39	"	24.9	남창동	239	김정순

51-34 제 611호

시

보

1977.6.16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재지		성명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소	
37	원효1가	23-29	대	8.3	23-29	대	8.3			국
38	"	23-28	"	3.2	23-56	"	0.4	원효1가	23-15	김복자
39	"	23-26	"	26.7	23-54	"	6.3	"		"
40	"	23-26	"	26.7	23-55	"	1.3	"	23-15	"
41	"	23-16	"	21.7	23-53	"	3.6	"	23-108	고찬운
42	"	23-25	"	28.3	23-52	"	4.3	"	23-10	이순자
43	"	23-10	"	24.2	23-51	"	3.3	"		전부순
44	"	23-9	"	33.9	23-50	"	6.9	"	23-9	최영택
45	"	23-27	"	8	23-27	"	8			국
46	"	23-17	"	36.2	23-17	"	36.2	해화동	107	김준
47	"	23-18	"	56.4	23-18	"	56.4	"		"
48	원효로2가	1-43	"	1.20	1-43	"	1.20			국
49	"	1-82	"	66.0	1-82	"	66	원효2가	1-10	오해성
50	"	1-80	"	9.6	1-127	"	9.2	"		이재선
51	"	1-41	"	13.2	1-126	"	1.7	"	1-41	최기영
52	"	1-84	"	7.7	1-125	"	6.3	"	1-84	김진용
53	"	1-40	"	7.9	1-124	"	6.3	"	1-40	윤정양
54	"	1-10	"	9.3	1-123	"	7.1	"	1-10	"
55	"	1-83	"	7.4	1-122	"	4.8	"	1-15	노영복
56	"	1-18	"	4.5	1-18	"	4.5	"		국
57	"	1-35	"	23.6	1-121	"	17.7	"	1-15	박운전
58	"	1-9	"	28.5	1-120	"	21.1	"	1-9	노병춘

제 611 호

시 보

1977.6.16 51-35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59	원효2가	1-8	대	24.2	1-119	대	24.2	원효로2가	1-8	국자구길
60	"	1-62	"	15	1-118	"	2.6	"	1-62	김인자
61	"	1-44	"	6	1-44	"	6	"	"	국
62	"	1-45	"	30.4	1-117	"	9.6	"	1-45	조락선
63	"	1-13	"	29.1	1-13	"	29.1	"	"	국
64	"	1-12	"	4.7	1-12	"	4.7	"	"	"
65	"	1-46	"	3.5	1-16	"	0.9	"	"	"
66	"	1-18	"	4.5	1-15	"	2.7	"	"	"
67	"	1-19	"	4	1-14	"	2.4	"	"	"
68	"	1-47	"	25	1-13	"	13.9	효창동 37	"	유예
69	"	1-48	"	27	1-12	"	15.4	원효로2가	1-48	율용운외 1
70	"	1-6	"	37	1-111	"	19.6	"	1-6	석주년
71	"	1-5	"	51.6	1-10	"	37.7	"	58-1	심희주
72	"	1-52	"	12.3	1-09	"	2.6	"	1-51	이광복
73	"	1-51	"	10	1-08	"	3.2	"	1-51	이광복
74	"	1-50	"	11	1-07	"	3.3	"	1-49	이종술
75	"	1-49	"	14.9	1-06	"	4.1	"	1-49	이종술
76	"	1-17	"	25.4	1-05	"	24.7	"	1-17	이대진
77	"	1-72	"	2.8	1-04	"	1.7	"	1-72	진정근
78	"	1-4	"	23.7	1-1	"	23.7	"	1-4	이명순
79	"	1-3	"	104.8	1-03	"	49.5	"	1-3	동양봉업(주)
80	"	1-2	"	62.6	1-02	"	29.1	"	1-2	"
81	"	1-16	"	32.9	1-01	"	16	"	1-16	최양홍
82	"	1-53	"	24.2	1-00	"	5.5	"	1-53	백선주
83	"	1-69	"	6.5	1-59	"	6.5	"	1-69	조경택
84	"	1-1	"	20.7	1-59	"	18.3	"	"	국

51-36 제 611 호

시 보

1977. 6. 16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85	원효2가	1-60	대	4.0	1-98	대	2.5		국
86	"	1-90	"	0.5	1-90	"	0.5	원효2가	1-57
87	"	1-55	"	27.3	1-97	"	8.2	"	1-55
88	효창동	25	"	162	25-1	"	6.1	효창동	25
89	"	30	"	17	30	"	17	원효2가	1-51
90	"	291	"	20	29	"	20	"	1-51
91	"	31-1	"	25.7	31-1	"	25.7	효창동	31-1
92	"	31-3	도	12	31-3	도	12		송정자
93	"	31-5	대	17	31-5	대	17	효창동	31-1
94	"	31-4	"	10.7	31-4	"	10.7	청파2가	10-25
95	"	31-2	구거	7.6	31-2	구거	7.6		신금숙
96	"	32-2	"	6.7	32-2	"	6.7		차진실외2
97	"	32-3	대	1	32-4	대	0.2		차진실
98	"	32-1	"	34.3	32-5	"	31.7		차진국
99	"	28-1	도	4.4	32-3	도	0.9		전상학
100	"	28	대	29.0	28-2	대	28.3	효창동	28
101	"	42-1	구거	8.6	42-4	구거	1		이석진
102	"	42-2	대	17.4	42-3	대	4.7		김치영외5
103	"	33-1	"	18.5	33-1	"	18.5	영동포7가290	시
104	"	33-2	구거	1.5	33-2	구거	1.5		한지연외1
105	"	34-1	대	14.1	34-1	대	14.1	효창동	34-1
106	"	34-2	구거	3.9	34-2	구거	3.9		정동안
107	"	35-1	대	6.9	35-1	대	6.9		유열
108	"	36-2	구거	2.10	35-2	구거	2.10		
109	"	36	대	23	36	대	23	효창동	36
110	"	37	"	35	37	"	35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성명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111	효창동	38	대	39	31-1	대	16.8	효	창동 38	서원혁
112	"	52	"	46	51-1	"	26	"	52	정규산
113	"	53-2	"	29.8	51-2	"	29.8	"	53-2	장기연
114	"	53-1	"	28	51-1	"	28	"	53-1	장간금한
115	"	53-3	"	12.4	51-3	"	12.4	"	53-3	최봉이
116	"	53-4	"	29.8	51-4	"	29.8	"	53-4	"
117	"	50	"	15	50	"	15	"	51	신옥희
118	"	51-2	"	62.1	51-4	"	34.9	"	51-2	최소울
119	"	54	"	37	51	"	37	좌	동	신남산
120	"	55	"	36	51	"	36			"
121	"	49-7	"	29.1	41-9	"	23.5	효	창동	국도
122	"	49-5	"	8	41-8	"	2.4	"	49-5	장안도
123	"	49-3	"	21.1	41-3	"	21.1	"	49-3	박수례
124	"	14-4	"	18.9	14-6	"	11.2	"	14-4	최태석
125	"	58	"	90	51-2	"	8	"	58	허중일
126	"	58	"	90	51-3	"	16	"	58	"
127	"	57	"	21.7	51-8	"	15.7	"	57	윤주은
128	"	57-4	"	15	51-7	"	14.5	"	57-4	이배식
129	"	57-2	"	14	51-2	"	14	"	57	강연희
130	"	57-3	"	15	51-3	"	15	"	57-3	정부홍
131	"	56	"	7	51	"	7	좌	동	윤창억
132	"	57	"	21.70	57	"	21.70	"		윤주은
133	"	56-1	도	9	56-1	도	9			시
134	"	57-5	대	1.6	57-6	대	1.6	효	창동 57	김상득
135	"	57-6	"	0.7	57-6	"	0.7	"	57	"
136	"	62-4	"	33.3	62-4	"	33.3	"	5-116	이종권

51-38 제 611 호

시 보

1977.6.16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자목	지적	지번	자목	지적	증	소	설명
137	효창동	42-2	대	34.1	62-2	대	34.1	효창동	62	김충주
138	"	62-5	"	16.2	62-5	"	16.2	"	62-5	김남우
139	"	62-3	"	12.6	62-7	"	12.4	"	"	국
140	"	62	"	46.3	62-6	"	46	"	"	"
141	"	61-2	"	8.3	61-3	"	5.3	효창동	61-2	박태철
142	"	61-1	"	11.7	61-4	"	9.9	"	61-2	"
143	"	60	"	4.6	60-1	"	5.7	"	60-1	김덕중
144	"	60-2	"	0.3	60-2	"	0.3	"	60-1	"
145	"	59-2	"	3.9	59-4	"	0.9	"	59-2	강용구
146	"	67-1	"	20.72	67-3	"	2.40	"	"	김단임
147	"	67-2	"	28.90	67-4	"	27.40	"	"	"
148	"	68	"	89.07	68	"	89.00	"	"	배은수
149	"	69-1	"	35.72	69-3	"	27.30	"	"	임도숙
150	"	69-2	"	33.30	69-2	"	33.30	"	"	단벌식
151	"	70-5	"	74.20	70-5	"	74.00	신촌	70-195	이창신
152	"	70-1	"	74.00	70-20	"	9.30	"	"	황산용기
153	"	70-14	"	2.60	70-14	"	2.62	"	"	박영재
154	"	70-13	"	25.00	70-13	"	26.00	"	"	"
155	"	70-12	"	28.10	70-13	"	28.10	"	"	노영석
156	"	70-6	도	6.30	70-6	도	6.30	"	"	이명환
157	"	70-2	대	29.00	70-19	대	6.90	효창동	70	강도안
158	"	70-3	"	23.00	70-18	"	4.10	"	"	김인숙
159	"	70-7	"	12.00	70-7	"	12.00	"	"	박인애
160	"	70-4	"	8.00	70-17	"	1.20	"	"	우승택
161	"	70-11	"	39.72	70-16	"	6.70	"	"	이운규
162	"	70-8	"	95.10	70-8	"	95.10	천호1가	17-51	임상국

제 611 호

시 보

1977. 6. 16 51 - 35

순위	소재지	문 할 전 표 시			문 할 후 표 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163	효창동	71-1	대	16.30	71-1	대	16.30	
164	"	72	"	10.00	72	"	10.00	
165	"	73-1	"	6.00	73-1	"	6.00	
166	"	74-8	"	22.10	74-8	"	22.10	김용준외 1
167	"	71-2	"	11.70	71-2	"	11.70	강덕형
168	"	70-10	"	15.30	70-10	"	15.30	박인애
169	"	70-9	"	8.77	70-15	"	2.22	김종덕
170	"	71-7	"	8.77	74-7	"	8.70	김용준외 1
171	"	74-9	"	5.90	74-9	"	5.90	"
172	"	73-4	"	0.50	73-4	"	0.50	국
173	"	73-5	"	2.90	73-5	"	2.90	"
174	"	73-6	"	5.00	73-6	"	5.00	"
175	"	73-7	"	3.40	73-7	"	3.40	"
176	"	73-2	"	1.60	73-2	"	1.60	김선물
177	"	73-3	철	3.60	73-3	철	3.60	국
178	"	74-1	대	20.50	74-10	대	20.50	김용준외 6
179	"	74-11	"	23.10	74-11	"	23.20	"
180	"	74-14	"	10.40	74-14	"	10.40	"
181	"	74-13	"	10.60	74-13	"	10.60	"
182	"	74-12	"	20.10	74-12	"	20.10	"
183	"	74	"	42.50	74-15	"	41.20	"
184	"	74-2	"	2.60	74-2	"	2.60	허순
185	"	74-3	철	3.50	74-3	철	3.50	국
186	"	74-4	대	3.20	74-4	대	3.20	민창기
187	"	74-5	"	4.20	74-5	"	4.20	"
188	"	74-6	철	18.50	74-6	철	18.50	국

51-40 제 611 호

시 보

1977. 6. 16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자목	지적	지번	자목	지목	주 소	성 명
189	효창동	74-1	철	2.80	74-1	철	2.80		국
190	"	6-49	대	154.00	6-74	대	54.70		김재숙
191	"	5-121	철	77.30	5-69	철	74.70		국
192	"	88-4	대	12.70	88-7	대	5.40		"
193	"	88-5	"	0.60	88-5	"	0.60		"
194	"	75-4	도	5.70	75-4	도	5.70		시
195	"	75-7	"	21.70	75-7	"	21.70		"
196	"	251-4	대	2.60	251-4	대	2.60		서창환
197	"	251-3	"	1.00	251-3	"	1.00		김인순
198	"	251-1	"	14.00	251-1	"	14.00		국
199	"	251-2	"	15.00	251-2	"	15.00		"
200	"	252-1	"	7.70	252-1	"	7.70		심삼원의 4
201	"	252-3	"	13.30	252-3	"	13.30		"
202	"	252-4	"	8.30	252-4	"	8.30		"
203	"	252-5	"	18.00	252-5	"	18.00		"
204	"	252-6	"	15.70	252-6	"	15.70		"
205	"	252-7	"	4.00	252-7	"	4.00		"
206	"	252-8	"	33.00	252-8	"	33.00		"
207	"	250-2	"	33.00	250-2	"	33.00		이종훈
208	"	250-3	"	0.60	250-3	"	0.60		"
209	"	79-1	"	20.90	79-3	"	20.70		"
210	"	79-2	"	1.10	79-2	"	1.10		"
224	"	98-8	"	40.60	98-8	"	40.60		백종규
225	"	244-1	"	17.3	"	"	17.3	도원동 8-63	박이화
226	"	244-2	"	12.7	"	"	12.7		김영원
227	"	245-1	"	6.7	243-7	"	4.0		강산직선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228	효창동	243-4	대	0.8	243-6	대	0.3		장산자신
229	"	243-3	"	26.1	243-5	"	15.9		정호철
230	"	243	"	1.0	243	"	좌동		장산자신
231	"	242-5	"	11.8	242-2	"	6.3		최승질
232	"	242-1	"	29.3	242-7	"	20.7		최승질
233	"	241-1	"	19.4	241-3	"	5.0		박용주
234	"	242-6	철	4.0	242-8	철	2.4		장산자신
235	"	242-2	대	4.0	242-4	대	4.0		김개연
236	"	99-1	도	11.30	99-1	도	11.30		
211	"	250-1	대	14.00	250-1	대	14.00		장기영
212	"	246-1	"	65.00	246-1	"	65.00		최경우
213	"	248	"	20.00	248	"	20.00		임귀순
214	"	249	"	15.00	249	"	15.00		이경래
215	"	247	"	36.00	247	"	36.00		김문두
216	"	246-2	"	18.00	246-2	"	18.00		
217	"	245	"	25.00	245-1	"	24.10		
218	"	81-2	"	10.00	81-3	"	5.40		박인석
219	"	81-2	"	14.70	81-2	"	11.60		이인도
220	"	81-1	"	20.57	81-1	"	7.40		노성욱
221	"	80-2	"	32.00	80	"	11.60		이병만
222	"	96-3	"	17.70	96-4	"	13.00		신간득
223	"	96-2	"	35.40	96-3	"	12.40		김영중
237	"	81-4	도	14.30	81-4	도	14.30		시현선
238	"	99	대	49.0	99	대	49.0		상우상학
239	"	98-1	"	38.9	98-7	"	13.5		양승화
240	"	98-5	"	36.6	98-6	"	28.4		하인우희6
241	"	102	"	21.0	102-2	"	1.6		이원보

51-42 세 611 호

시 보

1977.6.16

번호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242	효창동	102-1	도로	11.3	102-3	도로	3.9		市
243	"	101	대	6.0	101	다	6.0		양 철 훈
244	"	100	"	36.0	100	"	36.0		박 영 원
245	"	239	"	10.0	239	"	10.0		윤 용 규
246	"	238-2	"	23.4	238-5	"	0.1		조 준 회
247	"	238-1	"	23.0	238-4	"	18.2		영 산 철 일
248	"	237-1	"	21.9	237-4	"	7.8		정 태 백
249	"	236-1	"	44.2	236-3	"	0.1		홍 락 만
250	"	155-2	"	55.7	155-4	"	54.1		문 협 미 남
251	"	153	"	54.0	153-1	"	38.4		최 한 회
252	"	154-1	"	19.0	154-1	"	19.0	효 창 동 104	최 순 회
253	"	154-2	"	44.0	154-2	"	44.0		최 옥 회
254	"	155-1	"	62.2	155-1	"	62.2		박 성 대
255	"	152-7	"	25.9	152-12	"	10.1		김 도 성
256	"	155-3	"	7.1	155-3	"	7.1		대 협 미 남
257	"	152-8	"	27.2	152-11	"	1.9		신 경 죽
258	"	152-2	"	5.0	152-9	"	2.0		국
259	"	152-3	"	12.9	152-10	"	11.6		최 기 준
260	"	159-1	"	4.5	159-4	"	19.9		도 세 장
261	"	159-2	"	4.0	159-3	"	1.3		"
262	"	158	"	27.0	158	"	27.0		"
263	"	157	"	57.0	157	"	57.0		장 주 환
264	"	156	"	40.0	156-2	"	21.7		이 경 래
265	"	167-2	"	28.0	167-8	"	24.6		강 월 도
266	"	167-5	"	12.1	167-7	"	1.8		김 영 식 . 국
267	"	166-7	"	16.2	166-11	"	2.8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 시			분(합) 후(분) 표(부) 시(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268	효창동	169-7	대	1.5	161-14	대	0.1		국
269	"	166-10	"	0.7	165-10	"	0.7		국
270	"	166-6	"	13.2	165-6	"	13.2		송창옥
271	"	167-3	"	4.7	167-3	"	4.7		국
272	"	167-6	도로	2.1	167-5	도	2.1		국
273	"	167-1	대	11.8	167-1	대	11.8		양유석
274	"	167-4	"	6.3	167-4	"	6.3		국
275	"	166-9	"	2.6	166-9	"	2.6		국
276	"	166-3	도	2.6	166-3	"	2.6		국
277	"	166-8	대	0.5	166-8	대	0.5		국
278	"	166-5	"	15.9	166-5	"	15.9		신운희
279	"	166-7	"	17.6	166-2	"	17.6		박성복
280	"	166-1	"	21.7	166-1	"	21.7		송덕태
281	"	165-	"	54	165-1	"	44.6		박영록
282	"	164-2	"	40.2	164-17	"	0.6		한천동
283	"	167-	"	56.0	167-1	"	0.1		최진도
284	"	164-14	"	1.8	164-16	"	0.2		이봉석
285	"	164-11	"	16.5	164-15	"	5.8		유승길
286	"	170-8	"	34.8	170-8	"	34.8		윤기형
287	"	169-9	"	29.1	169-9	"	29.1		정인성
288	"	169-4	"	12.1	169-4	"	12.1		국
289	"	169-9	"	29.1	169-14	"	16.1		남상준
290	"	65-	"	74	65-1		22.4		이복일
297	"	169-1	"	5.3	169-15	"	4.0		국
298	"	170-5	"	29.7	169-13	"	9.0	169-5	송복남
299	"	170-6	"	27.3	169-12	"	3.0	169-6	이국선

51-44 제 611 호

시 보

1977.6.16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지번	지목지적	지번	지목지적	주 소	성명
300	효창동	170-5	대 4.9	(과 동)		169-6	이종선
301	"	170-1	" 3.4	"		"	"
302	"	170-4	" 1.3	"		"	국
303	"	170-9	" 88	"		170-9	박안홍
304	"	170-7	" 16.9	"		170-7	송찬경
305	"	170	" 7.2	"		170	박안홍
306	"	170-2	" 14.7	"		170-2	박치홍
307	"	170-1	도 6.7	도		"	박시안
308	"	171-3	매 20.1	171-10	매 0.6	171-3	김종안
309	"	171-2	도 10.1	171-8	도 0.3	"	국
310	"	171-4	매 17.6	171-9	대 11.0	171-4	송찬경
311	"	172-3	" 16.1	172-4	" 12.1	172-3	박시봉
312	"	172-2	도 7.9	172-5	도 7.4	172-2	국
313	"	172-1	매 7.5	172-1	대 7.5	172-2	박순복
314	"	176-2	" 7.5	(과 동)		176-2	윤공원
315	"	177-1	" 19.0	"		177-1	박순복
316	"	177-3	" 17	"		177-3	윤공원
317	"	177-2	도 1.0	"		"	국
318	"	178-1	대 14.2	"		178-1	유성원
319	"	178-4	" 0.7	"		178-4	박종국
320	"	179-1	" 0.2	"		"	국
321	"	178-2	" 14.7	"		178-2	문덕형
322	"	179-5	" 0.9	"		179-5	국
323	"	179-2	도 6.8	"		179-2	국
324	"	179-3	매 16.6	"		179-3	이영일
325		179-4	10.5	"		179-4	박종국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326	효창동	184-12	대	0.4	(과동)				국
327	"	184-5	"	4	184-7 대	1.0	184-5		박봉규
328	"	180-1	"	22.9	180-5	"	10.7	180-1	이경보
329	"	180-2	"	18	180-6	"	0.1	180-2	한상준
330	"	180-4	"	2.1	(과동)				한국은
331	"	184-4	"	16.9	184-6 대	5.3	184-4		이재은
332	"	184-1	"	16.6	184-1	"	16.6	184-1	이재두
333	"	184-11	"	4.7	(과동)			184-11	김기필
334	"	184-8	"	14	184-15 대	6.7			국국
335	"	184-13	"	4.6	(과동)				국국
336	"	184-9	"	11.2	184-14 대	0.3	184-9		국국
337	"	189	"	34	(과동)		189		심일선
338	"	188	"	36	188-2 대	30.1	188		세예수
339	"	190-8	"	2.0	(과동)		190-8		최경균
340	"	190-6	"	13		"			임국성외인
341	"	190-1	도	9.0		"			·
342	"	190-7	대	4.9		"			국국
343	"	190-5	"	1.5		"			최영규
344	"	190-9	"	3.1		"			최전병예
345	"	190-4	"	10.7		"			임국성외인
346	"	190-2	"	10.1		"			국국
347	"	190-3	도	4.6		"			국국
348	"	189-1	도	14.7		"			최순태
349	"	191-2	대	8.0		"			김여우
350	"	191-1	"	4.0		"			한유희
351	"	192-3	"	1.4		"			

51-46 제 611 호

시 보

1977.6.16

순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체)			소유자	성명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352	효창동	192-2	대	21.4	(파동)				최창성
253	"	192-1	"	6.0	"				장남순
254	"	193	"	25	193-1	대	21	193	김정기
355	"	196-2	"	24	196-4	"	0.4	196-2	최순남
356	"	194	"	20	194-1	"	0.5	194	김종울
357	"	5-245	"	37.3	5-649	"	0.7	5-245	이승여
358	"	5-247	"	40	5-647	"	28.2	5-247	신순철
359	"	5-246	"	36	5-648	"	0.4	5-246	허웅구
360	"	5-248	월	32	5-646	월	31.2		국
361	"	5-416	"	22	(파동)				국
362	"	5-249	대	31.5	"			5-249	김종관
363	"	5-605	"	16.2	"			5-605	최희근
364	"	5-250	"	41.3	"			5-250	김동식
365	"	5-251	"	39	"			5-251	김선익
366	"	5-290	"	51.7	5-663	대	45	5-290	성기주
367	"	5-312	월	22.2	5-662	월	13.6		국
368	"	5-311	"	68	5-643	"	66.1		국
369	"	5-219	대	57	5-644	대	31.2	5-219	윤낙영
370	"	5-220	월	54	5-645	월	5.2		국
371	"	5-221	대	61.7	5-645	대	0.1	5-221	대한예수교
372	"	5-266	"	175.3	5-653	"	63.5	5-266	장노희
373	"	5-267	"	138.8	5-652	"	66	5-267	이운성
374	"	5-497	"	34.4	5-651	"	10.2		김용규
375	"	5-280	월	85.3					국
376	"	5-279	대	101	5-658	대	87.7	5-271	임계희
377	"	5-278	"	75	5-657	"	61.4	5-278	이규환

제 611 호 시 보 1977. 6. 16 51-47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378	효창	5-283	철	49.7	5-660	대	36.9	5-283	박경규
379	"	5-284	대	30.7	5-661	대	1.6	5-284	박인환
380	"	5-282	"	39.5	5-655	철	9.9		국
381	"	5-281	"	30	5-669	철	3.2		국
382	"	200-2	"	49.9	200-61	대	13	200-2	김풍경
383	"	200-12	철	70.8	200-15	대	2.2	200-12	성인근
384	"	5-269	설	49.8	-654	철	128.8		국
					-655	철	13.9		
385	"	5-274	대	74	5-656	대	31.5	5-274	이찬우
386	"	5-275	대	74.3	(과동)			5-275	홍중덕
387	"	5-276	철	89	()			5-276	박태순
388	"	5-277	대	50.3	()			5-277	최병남
389	"	5-270	대	53.7	()			5-270	박성희
390	"	5-271	"	41.7	()			5-271	김호얼
391	"	5-272	"	41.0	()			5-272	서형식
392	"	5-145	철	1956.1	5-650	철	40.6	5-145	국
393	"	5-273	대	63	(과동)			5-273	전용현 되인
394	용문	5-60	"	16.7	5-231	대	1.2	5-60	오기성
395	"	5-61	"	20	5-232	"	9.1	5-61	강산규
396	"	5-129	"	17	5-233	"	14.8	5-129	최태문
397	"	5-137	"	13.7	5-234	"	1.0		국
398	"	5-136	철	5.7	5-235	철	3.2		국
399	"	5-62	대	15	(과동)			5-62	최의문

51-48 제 611 호 시 보

1977. 6. 16

◎ 도봉구 풍고제 325 호 공인개작 공고 다음과 같이 공인 및 개인을 빼기하고 개작 사용로록 하였기		이를 풍고함 1977. 6. 18 도봉구청장
1. 공인명 : 상계 3동, 공능동, 창동, 미아 5동장, 직인 및 개인 2. 사용개시일자 : 1977. 6. 20 09:00. 3. 공인의 인형 : 다음		
동명	폐기인영	신조인영
상계 3동 장인 및 제인	 	 
공능동장인 및 제인	 	 

동 명	폐 기 인 익	신 조 이 성
창동장인 및 제 인		
미아제 5 동 장 인 및 제 인		
예 규		• 지구·라·한다) 시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업무 수령에 적정을 기관에 있다.
<p>◎ 서울특별시예규제 349호</p> <p>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 시유지관리및처분업무 취급요령</p> <p>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서울특별 시 시유재산관리및 처분업무요령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주택 개량·재개발사업 지구내외(이하</p>		<p>제2조(동기) 주택개량·재개발·판매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양여된 국·공유지의 농지·임야·사유 는 주택행정과장이 담당한다.</p> <p>제3조(손해금 및 부수금전액) 1세대 내 토지를 대부분 또는 예상되는 부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은 주지하지 아니한다.</p>

② 서울특별시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최초 매수통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통지 당시 시가의 년 6 풀 이상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손해추징금 산출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사용승락) 지구내 토지를 일시불로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또는 가옥대장등재등을 위하여 그 토지의 사용승락의 요청이 있으면 잔금 납부이전이라도 사용승락을 할 수 있다.

제 5 조 (대부 및 매각) ① 지구내 토지의 대부는 매각을 전제하여 대부계약과 매매계약은 동시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개발사업 시행이전이라도 재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매각할 수 있다.

③ 일시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자가 잔금 납기일까지 잔금을 납입치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시에는 기한 납부한 계약금 및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④ 계약이 해제된 토지는 공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자가 매수를 요청한 때에는 수의 계약할 수 있다.

⑤ 대부 대상자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토지를 분양받은자 (계량승인 포함)와 그 권리의 포괄 승계인이어야 한다.

⑥ 대부 및 매수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 청 서

2.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대지 증명

3. 주민등록 초본

4. 현지개량 승인서 또는 정착지

배정서 기타 정당한 점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구청장 (출장소장)의 점유자 조사보고서 이에 가름할 수 있다.

5. 시세, 국세 완납증 또는 미과세 증명

⑦ 지구내의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1개월로 할 수 있다.

제 6 조 (준용)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관리 및 처분 업무요령과 서울특별시

제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7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 시행이전에 관리 및 처분한 재개발지구내 시유지의 관리 및 처분은 이 예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불량주택재개발 지구내 시유지 관리 및 처분업무 취급요령 (예규 311호)은 이를 폐지 한다.

사 령

◎ 1977. 6. 14

장기 용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 1977. 6. 15

도봉구 행정사무판시보 신용권

문체청 전출을 명함.

◎ 1977. 6. 18

예산담당관 장준 힘
지방행정사무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덜함.

◎ 1977. 6. 25

도시가스과 신종섭
지방행정주사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휴직을 면함.